의안번호	2202632
의 뢰 인	윤준병의원
회 답 일	2024. 8. 13.
추계번호	24B266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재정수반요인[1)]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의3 신설 (농어업재해기금의 설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재해 대책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0조에 따른 재보험사업(이하 "재보험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함	의무규정
2	안 제4조의4 신설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함(제1항) 1. 정부출연금 2. 다른 회계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3.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4. 제2항에 따른 차입금 5. 기금의 운용수익금 6.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받은 재보험료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재보험금의 회수 자금 7.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제7호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8.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제6항제7호에 따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 다른 기금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음(제2항)	의무·재량 규정
3	안 제4조의5 신설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함 1. 재해대책 수립 및 재해에 대한 보조 및 지원 2. 제4조의4제2항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보험금의 지급 4.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위탁경비 포함)의 지출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재해대책 또는 재보험사업을 유지·개선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지출	의무규정

1)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2633호),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2634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26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4	안 제4조의6 신설 (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관리·운용함(제1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재보험사업에 한정함)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음(제2항)	의무·재량 규정
5	안 제4조의8 신설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기금의 결산결과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Ⅱ. 미첨부 등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4조의3 신설(농어업재해기금의 설치)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4조의4 신설(기금의 조성)	
3	안 제4조의5 신설(기금의 용도) －제1·2·3호 및 제5호	
5	안 제4조의8 신설(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4	안 제4조의6 신설(기금의 관리·운용) 및 안 제4조의5 신설(기금의 용도) － 제4호(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위탁경비를 포함함)의 지출)	• 미대상 － 개정안은 신설되는 농어업재해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재보험사업에 한정)을 농어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경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 － 이는 같은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2633호)에 따라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규정이 개정안으로 이관되는 것임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기금운용계획: 2022~2024년>

(단위: 억원, %)

기금	2022 결산	2023 당초	2023 수정(A)	2024 (B)	증감률 (B-A)/A
농어업재해 재보험기금	2,132	905	905	3,704	309.5

주: 총계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국회예산정책처 「2024 대한민국 재정」(2024.5.) 에서 재인용)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관리·운용 및 재보험사업은 현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위탁 수행중이며,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는 위탁수행경비를 지원중 – 따라서 개정안은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지원예산 현황: 2022~2024년>

(단위: 백만원)

소관	회계·기금	사업명	2022	2023	2024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기관운영비 지원 (1038-305)	7,886	7,912	7,951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인건비 (7079-101)	416	424	435
		기타경비 (7079-201)	181	172	164
해양수산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양식어업재해보험 (3443-300) -양식보험 사업관리 위탁	403	403	403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Ⅱ-1)」, 2024.1.

2. 상세 사유

가. 농어업재해대책 및 농어업재해보험 개요

(1) 농어업재해대책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는 현행법에 따라 농어업 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함으로써 농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대책을 마련하고 일정 예산을 편성·집행중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미래 시점의 농어업재해 발생 여부 및 농어업재해로 인한 피해 규모 예측이 곤란하여 해마다 일정 예산을 편성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중임[2)]

–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농업재해대책 복구비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품목별로 지원단가를 상향조정해오고 있음

2) 예산이 부족한 경우 예비비 활용 또는 이전용 등을 통해 충당

※ [참고자료 1] 농어업재해대책 사업 개요 참고

[표 1] 농어업재해대책비 예결산 현황: 2019~2024년

(단위: 백만원)

연도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사업명	재해대책비 (1033-302)	재해대책비(융자)[1] (1033-304)	양식등 재해대책비 (3443-302)
2019	예산	557,64	28,500	10,000
	결산	68,860	6,187	10,842
2020	예산	60,188	8,500	7,500
	결산	133634	851	8,286
2021	예산	100,000	28,500	8,000
	결산	145,604	1,252	6,150
2022	예산	150,000	8,500	8,000
	결산	65,039	5,893	7,973
2023	예산	200,000	—	8,000
	결산	170,023		16,909
2024	예산	280,000	—	50,000

주: 1) 2023년부터 재해대책비(융자)에서 농업자금이차보전(1038-301) 사업으로 전환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II-1), 각 연도)

(2) 농어업재해보험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는 현행법에 따라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 제도 운영중

○ **(농업재해보험)** 농가 경영안정 및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여 농업인의 재해보험 가입 지원

-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농업수입보장보험, 가축질병치료보험을 운영중이며, 보험가입자(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지원

○ **(양식어업재해보험)**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어가의 경영불안 해소와 어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어업 생산활동에 기여

- 양식수산물 및 그 시설물에 대한 보험료의 일부 지원

※ [참고자료 2] 농어업재해보험 및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개요,
[참고자료 3]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보험료 지원, 보험금 지급 현황 참고

[표 2] 농어업재해보험 제도

구분	종류	보험목적물	보험료 지원율 (국비)
농업재해보험 (총 97품목)	농작물재해보험 (73품목)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감자, 콩, 양파, 벼(일반벼/조사료용벼), 배추, 양상추 등	순보험료의 33~60%
	가축재해보험 (16품목)	소, 돼지, 가금(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거위·타조·관상조), 말, 기타(사슴·양·벌·토끼·오소리)	영업보험료의 50%
	농업수입보장보험 (7품목)	콩, 포도, 양파, 마늘, 고구마, 가을감자, 양배추	순보험료 50%, 운영비 100%
	가축질병치료보험 (1품목)	소	영업보험료의 50%
양식어업재해보험 (총 28품목)	본사업 (17품목)	넙치, 전복, 다시마, 굴, 홍합 등	순보험료의 50%
	시범사업 (11품목)	김, 멍게, 뱀장어, 미역 등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3] 농업재해보험 및 양식어업재해보험 예결산 현황: 2021~2024년

(단위: 백만원)

소관	사업명		2021		2022		2023		2024
	세부사업	내역사업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보험	농작물 재해보험	351,871	353,707	508,820	434,451[1)]	607,729	531,801	535,584
		가축 재해보험	119,093	117,708	119,093	113,684	119,093	110,553	112,220
		농업수입 보장보험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8,100
		가축질병 치료보험	2,000	1,549	2,000	1,778	1,600	1,593	1,200
		소계	475,464	475,464	632,413	552,413	730,922	646,447	657,104
	농작물재해보험 운영비지원		83,691	83,691	109,791	109,791	98,811	98,811	98,811
	소계		559,155	559,155	795,464	662,204	829,733	745,258	755,915
해양수산부	양식어업 재해보험	순보험료지원	16,267	16,267	15,295	12,443	13,899	13,899	15,285
		운영사업비 지원	11,869	11,792	9,603	8,891	8,727	8,124	8,422
		양식보험사업 관리위탁	153	230	403	443	403	356	403
	소계		28,289	28,289	25,301	21,777	23,029	22,379	24,110

주: 1) 농특회계 세수 부족으로 인한 미집행 부분에 대해 '23년 이월 및 집행 완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나. 농어업재해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안 제4조의3부터 제4조의8까지 신설)

❑ 개정안은 농어업재해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의 설치·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기금의 조성에 따른 지출(정부출연금, 타회계·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등) 및 기금의 용도(재해복구비 지원,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등)에 따른 지출, 기금 손실금에 대한 정부의 보전 등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됨

○ 기금의 조성 및 용도는 다음과 같음

[표 4] 농어업재해기금의 조성 및 용도

기금의 조성 (안 제4조의4)	기금의 용도 (안 제4조의5)
1. 정부출연금 2. 다른 회계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3.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4. 제2항에 따른 차입금 5. 기금의 운용수익금 6.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받은 재보험료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재보험금의 회수 자금 7.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제7호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8.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제6항제7호에 따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부터 받은 전입금[3]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이외에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 다른 기금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 차입(제2항)	1. 재해대책 수립 및 재해에 대한 보조 및 지원 2. 제4조의4제2항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보험금의 지급 4.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위탁경비를 포함한다)의 지출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재해대책 또는 재보험사업을 유지·개선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지출

자료: 개정안에서 발췌·정리

3) [참고자료 4]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현황, [참고자료 5]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현황 참고

❑ 그러나 개정안에 따른 농어업재해기금의 규모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출연금 및 차입금 규모, 타회계·기금으로부터 전입금 규모 등을 특정하기 곤란하고, 향후 농어업재해 발생 여부 및 복구비용 등을 예측하기 곤란하여 현시점에서는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4)]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직무대리
경제비용추계과	이주호	박인재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주호	02-6788-3746	progress@nabo.go.kr

4)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농업재해와 어업재해 피해복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향후 발생 여부 및 피해규모를 예측할 수 없어, 관련 비용추계는 곤란한 실정이라는 공통된 의견임

[참고자료 1] 농어업재해대책 사업 개요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1. 농업재해대책

❑ 목적

○ 농업 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그 사후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

❑ 지원 근거: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보조 및 지원)

❑ 지원 내용

○ **(직접 지원)** 농업경영에 필요한 복구비를 지원

- 대파대(종묘·비료대), 농약대, 입식비(어린가축 구입비), 시설복구비 등

< 주요 항목 복구비 부담률 >

(단위: %)

항목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농약대	70	30	—	—
대파대	35	15	30	20
가축입식	35	15	30	20
농림시설	24.5	10.5	55	10

○ **(간접 지원)** 농작물 피해가 큰 농가(피해율 50% 이상)에 대하여 생계비,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등 지원

○ **(공공시설 복구비)** 수리시설 등 공공시설 복구비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

- 국가관리(국비100%), 지방관리(국50, 지방50), 농어촌공사 관리(국70, 지방30)

○ **(농업정책자금)** 이자감면·상환연기 및 신규자금 지원

- 농가피해율에 따라 기 대출 농업정책자금 이자감면 및 상환연기

  * 피해율 30~49% 농가는 1년, 50% 이상 농가는 2년 지원

- 원활한 영농복구를 위해 피해농가에 융자 추가 지원(재해대책경영자금)

  * 고정금리 1.8%(또는 6개월 변동금리), 대출기간 1년(일반작물 1년, 과수 3년 연장가능)

2. 어업재해대책

❑ 목적

○ 자연재해 및 어업재해(태풍, 이상기후 등) 발생으로 양식생물, 시설물 등에 피해를 입은 어가에 대한 복구지원을 통해 신속한 어가경영회복

❑ 지원 근거: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보조 및 지원)

❑ 지원항목

구분	지원항목	지원비율 (%)	지원조건 및 지원액
직접 지원	어선·어망·어구 (규모에 따라 지원비율 상이)	보조 35, 융자 55	지원액 = 기준단가 × 톤수
		융자 70 (40톤이상 어선)	지원액 = 건조지원 기준 지수
	증·양식시설복구비	보조 35, 융자 55	지원액 = 기준단가 x 피해시설량
	수산생물 등의 입식	보조 50, 융자 30	지원액 = 기준단가 × 피해수량
	생계지원비	보조 100	1인가구 623,300원~6인가구 2,168,300원, 7인이상 1명 증가시 263,800원 추가 피해단위 피해율 50%
간접 지원	영어자금 상환연기	1년	어가단위 피해율 30~50%
		2년	어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재해대책 특별융자	융자 100	해수부 장관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

○ **(지원율)**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한 부담기준) 참고

[참고자료 2] 농어업재해보험 및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개요

1.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축종 도입현황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5]

❑ 농작물재해보험

연도별	대상 품목	누계
2001	사과, 배	2
2002	포도, 복숭아, 단감, 감귤(온주밀감류/만감류)	6
2006	떫은감	7
2007	밤, 참다래, 자두	10
2008	감자(봄감자(경북, 충남)/고랭지감자/가을감자), 콩, 양파, 고추, 시설(수박)	15
2009	고구마, 옥수수(일반옥수수/조사료용옥수수), 마늘, 매실, 벼(일반벼/조사료용벼)	20
2010	시설(딸기, 토마토, 오이, 참외), 대추	25
2011	시설(풋고추, 애호박, 국화, 장미), 복분자(고창, 정읍, 순창, 함평, 담양, 장성)	30
2012	인삼, 시설(멜론, 파프리카), 오디(전북, 전남, 상주, 안동), 차(보성, 광양, 구례, 하동)	35
2013	시설(부추, 시금치, 상추),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40
2014	시설(배추, 가지, 파)	43
2015	시설(무, 백합, 카네이션)	46
2016	밀, 시설(미나리), 오미자, 양배추(제주, 무안)	50
2017	시설(쑥갓), 무화과(영암, 신안, 목포, 무안, 해남), 유자(고흥, 완도, 진도, 거제, 남해, 통영)	53
2018	양송이버섯, 새송이버섯, 메밀(전남, 제주), 브로콜리(제주, 충북)	57
2019	배추(고랭지 / 봄배추 - 평창, 영양, 해남 / 월동 - 해남 / 가을 - 괴산, 해남, 영양), 무(고랭지 / 가을 - 고창, 영암, 무안, 예천, 나주, 당진, 홍천, 충주 / 월동 - 제주), 당근(제주), 단호박(경기, 제주), 파(대파 / 쪽파·실파 - 아산, 보성)	62
2020	호두(김천), 팥, 시금치, 보리(해남, 보성, 김제, 군산, 밀양), 살구(영천)	67
2023	귀리(강진, 해남), 시설(감자)(김제, 부안), 양상추(횡성, 평창)	70
2024	두릅(순창, 광양, 순천, 하동), 블루베리(순창, 담양, 평택, 상주, 의성, 영동), 수박(봉화, 안동, 영주, 예천, 고창, 진안)	73
합계	73개 품목(85개 상품)	

* 밑줄 친 품목은 본사업 품목임

5)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23~'27)」, 2023.1. 등)

❑ 가축재해보험

연도별	대상 축종	누계
1997	소	1
2000	돼지, 말	3
2002	닭	4
2004	오리	5
2005	꿩, 메추리	7
2006	칠면조, 사슴	9
2007	타조, 거위	11
2008	양	12
2009	꿀벌	13
2010	토끼	14
2011	관상조	15
2012	오소리	16
합계	**16개 축종**	

❑ 수입보장보험

연도별	대상 품목	누계
2015	콩, 포도, 양파	3
2016	마늘	4
2017	고구마, 가을감자	6
2018	양배추	7
2024	보리, 옥수수	9
합계	**9개 품목**	

2.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대상지역 현황

(해양수산부 제출자료)[6]

❑ 보험 대상품목(총 28개)

○ **본사업 품목(17)**: 넙치, 전복, 굴, 조피볼락,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볼락, 숭어, 능성어, 강도다리, 홍합, 다시마, 톳, 가리비 및 그 시설물

○ **시범사업 품목(11)**: 멍게, 미역, 김, 뱀장어, 송어, 미더덕, 오만둥이, 터봇, 메기, 향어, 전복종자 및 그 시설물

❑ 보험사업 실시지역

○ 본사업 품목(17): 전국

○ 시범사업 품목(11): 보험의 효용성·실시 가능성 등 검증을 위해 일정 기간 제한된 지역에서 실시

<시범사업 품목별 사업지역 현황>

품목명	사업지역
김	전남 해남군, 신안군, 고흥군, 완도군, 장흥군, 목포시, 무안군, 진도군, 함평군 충남 서천군, 태안군, 보령시/ 경기 안산시, 화성시/ 전북 군산시, 부안군/ 부산 강서구 인천 옹진군, 강화군(단, 괭생이 모자반 및 유빙 특약은 특정지역만 가입 가능)
멍게	경남 통영시, 남해군, 고성군, 거제시/ 강원 고성군, 삼척시, 강릉시, 양양군, 속초시 경북 경주시,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제주도/ 전남 여수시
미역	전남 고흥군, 진도군/ 부산 기장군/ 경남 통영시, 거제시
뱀장어	전남 영광군, 함평군, 강진군, 무안군,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영암군, 나주시, 순천시, 담양군, 곡성군, 화순군, 해남군, 장성군/ 전북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완주군, 익산시/ 충북 충주시
송어	강원 영월군, 정선군, 춘천시, 평창군, 삼척시, 철원군, 횡성군, 태백시, 홍천군, 화천군 경북 구미시, 상주시/ 충북 보은군, 충주시, 청주시, 제천시, 괴산군/ 경기 가평군
미더덕	경남 창원시,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오만둥이	경남 창원시,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터봇	제주도
메기	충남 홍성군, 논산시, 당진시, 부여군, 아산시, 예산군, 청양군/ 전북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정읍시, 완주군, 부안군, 고창군, 장수군, 임실군
향어	전북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정읍시, 완주군, 부안군, 고창군/ 전남 함평군
전복종자	전남 진도군, 해남군, 완도군

6) 해양수산부 제출자료(「제1차('23~'27년)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2023. 6. 등)

[참고자료 3]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보험료 지원, 보험금 지급 현황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농업재해보험

○ 농작물재해보험

(단위: ha, 호, 백만원)

연도	가입 면적 (ha)	가입 농가수 (호)	보험 가입률 (%)	순보험료 (A)	국고지원		지방비 지원			자부담		ha당 순보험료 (만원)	ha당 농가부담 보험료 (만원)	보험금 지급 실적	
					국고지원금 (B)	국고지원율 (B/A)	시도 지원금 (C)	시군구 지원금 (D)	지방비 지원율 (C+D)/A	농가 부담금 (E)	농가 부담률 (E/A)			건수 (건)	지급액 (백만원)
2023	636,727	547,183	52.0	1,039,681	506,116	48.7%	130,793	273,302	38.9%	129,469	12.5%	163.3	20.3	215,368	1,004,249
2022	609,793	512,995	49.9	949,656	466,677	49.1%	116,121	247,167	38.3%	119,692	12.6%	155.7	19.6	162,232	555,777
2021	594,250	497,884	49.4	848,524	417,546	49.2%	100,073	213,311	36.9%	117,595	13.9%	142.8	19.8	172,822	573,989
2020	550,174	440,173	45.0	722,223	355,306	49.2%	84,360	180,563	36.7%	101,994	14.1%	131.3	18.5	225,240	1,015,827
2019	456,024	339,582	38.8	511,146	252,154	49.3%	62,068	123,237	36.3%	73,688	14.4%	112.1	16.2	190,492	898,048
2018	376,593	275,133	32.9	550,149	271,334	49.3%	57,973	126,858	33.6%	93,984	17.1%	146.1	25.0	85,099	534,450

○ 가축재해보험

(단위: 천두, 호, 백만원)

연도	가입 두수 (천두)	가입 농가수 (호)	보험 가입률 (%)	영업 보험료 (A)	국고지원		지방비 지원			자부담		천두당 영업 보험료 (만원)	천두당 농가부담 보험료 (만원)	보험금 지급 실적	
					국고지원금 (B)	국고지원율 (B/A)	시도 지원금 (C)	시군구 지원금 (D)	지방비 지원율 (C+D)/A	농가 부담금 (E)	농가 부담률 (E/A)			건수 (건)	지급액 (백만원)
2023	290,820	36,333	94.4	214,047	103,491	48.3%	8,071	18,787	12.5%	83,697	39.1%	73.6	28.8	41,967	164,786
2022	288,293	34,023	94.7	219,002	105,474	48.2%	7,929	18,948	12.3%	86,651	39.6%	76.0	30.1	39,181	167,904
2021	285,075	22,791	93.7	230,330	110,741	48.1%	7,859	17,770	11.1%	93,960	40.8%	80.8	33.0	34,600	146,247
2020	276,486	21,760	92.8	225,706	107,528	47.6%	7,373	16,697	10.7%	94,108	41.7%	81.6	34.0	34,739	147,730
2019	284,785	21,448	93.3	214,860	105,619	49.2%	6,915	15,187	10.3%	87,139	40.6%	75.4	30.6	35,996	174,302
2018	278,139	19,706	93.0	187,405	92,003	49.1%	5,400	12,470	9.5%	77,531	41.4%	67.4	27.9	32,356	239,275

○ 농업수입보장보험

(단위: ha, 호, 백만원)

연도	가입 면적 (ha)	가입 농가수 (호)	보험 가입률 (%)	순보험료 (A)	국고지원		지방비 지원			자부담		ha당 순보험료 (만원)	ha당 농가부담 보험료 (만원)	보험금 지급 실적	
					국고지원금 (B)	국고지원율 (B/A)	시도 지원금 (C)	시군구 지원금 (D)	지방비 지원율 (C+D)/A	농가 부담금 (E)	농가 부담률 (E/A)			건수 (건)	지급액 (백만원)
2023	1,233	1,652	3.3	4,299	2,149	50.0%	488	1,185	38.9%	476	11.1%	348.7	38.6	1,507	5,858
2022	1,141	1,566	3.2	4,021	2,011	50.0%	473	1,093	38.9%	445	11.1%	352.4	39.0	1,313	4,020
2021	1,007	1,457	3.0	3,946	1,973	50.0%	442	1,029	37.3%	502	12.7%	392.1	49.8	1,024	2,460
2020	1,561	2,006	4.2	6,638	3,319	50.0%	846	1,624	37.2%	849	12.8%	425.2	54.4	1,153	3,451
2019	1,207	1,643	3.7	6,579	3,290	50.0%	776	1,686	37.4%	828	12.6%	545.2	68.6	1,662	10,912
2018	2,121	1,979	7.3	7,291	3,646	50.0%	821	1,592	33.1%	1,233	16.9%	343.8	58.1	5,595	49,763

○ 가축질병치료보험

(단위: 천두, 호, 백만원)

연도	가입 두수 (천두)	가입 농가수 (호)	보험가입률 (%)	영업보험료 (A)	국고지원		지방비 지원[1]			자부담		천두당 영업보험료(원)	천두당 농가부담보험료(원)	보험금 지급 실적	
					국고지원금 (B)	국고지원율 (B/A)	시도 지원금 (C)	시군구 지원금 (D)	지방비 지원율 (C+D)/A	농가부담 (E)	농가부담률 (E/A)			건수 (건)	지급액 (백만원)
2023.	39	748	7.3	3,182	1,591	50%				1,591	50%	81,747,021	40,873,510	33,503	2,862
2022	44	872	8.3	3,555	1,778	50%				1,778	50%	80,549,214	40,274,607	32,129	2,826
2021	41	849	9.1	3,096	1,548	50%				1,548	50%	76,300,873	38,150,428	27,873	2,502
2020	32	687	7.1	2,501	1,250	50%				1,250	50%	79,154,851	39,577,238	19,700	1,715
2019	31	573	13.3	2,268	1,134	50%				1,134	50%	72,942,016	36,483,340	7,796	717
2018	7	176	6.8	537	268	50%				268	50%	71,677,662	35,838,838	63	7

주: 1) 가축질병치료보험은 시범사업지역 지자체와 가입영업점(농축협)에서 지방비를 직접 정산하여 보험사업자가 지방비 지원금액에 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단위: 호, 백만원. 신계약 기준)

연도	가입 어가수 (호)	보험가입률 (%)	순보험료 (A)	국고지원(순보험료)		지방비 지원[1]			자부담[2]		어가당 순보험료 (천원)	부가 보험료 (국고지원)	보험금 지급 실적	
				국고 지원금 (B)	국고 지원율 (B/A)	시도 지원금 (C)	시군구 지원금 (D)	지방비 지원율 (C+D)/A	어가부담 (E)	어가 부담률 (E/A)			건수 (건)	지급액 (백만원)
2023	2,936	39.8	29,339	14,728	50	3,463	5,847	32	5,301	18	1,806	6,225	238	10,558
2022	2,733	37.0	24,349	12,424	51	2,803	4,903	32	4,219	17	1,544	4,638	377	9,564
2021	2,194	29.7	20,079	10,013	50	—	—	—	10,066	50	4,588	3,749	238	10,762
2020	2,682	28.0	24,557	12,278	50	—	—	—	12,279	50	4,578	3,642	806	33,195
2019	3,744	39.1	32,820	16,410	50	—	—	—	16,410	50	4,383	6,380	2,617	123,774
2018	4,250	44.3	41,981	20,990	50	—	—	—	20,991	50	4,939	10,359	1,275	75,775

주: 보험료는 환급금이 차감된 금액이며, 보험금은 지급준비금은 제외된 금액임

1) '22년 이전 지방비지원의 경우 지자체와 회원조합이 수기 정산하여 실지원금 파악이 어려우며, '22년 이후 국고지원과 함께 즉시 지원하는 전산화 시스템 구축 완료를 통해 실지원금 확인 가능

2) '22년 이전 자부담액은 지방비가 포함된 금액임

[참고자료 4]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현황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설립목적

○ 상생협력을 통한 대·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및 양극화를 해소하고, 농어촌·농어업인의 상생협력을 도모

❑ 근거법률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8]

❑ 연혁

○ '04.12月: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설립 및 출범

○ '17.01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명칭 변경

○ '17.11月: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관리·운용 법제화('18.5.29 시행)

○ '22.03月: 김영환 사무총장(제6대) 취임

❑ 역할 및 기능

○ 대·중소기업간 협력사업의 개발 및 운영 지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 및 수탁·위탁거래 공정화 지원

○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및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운용

❑ 조직 및 인원

○ (조 직) 1처 4본부 2실 17부 3팀 / (인 원) 196명

---

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①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8)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①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등·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민간기업등과 농어촌·농어업인등 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조직도>

자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홈페이지
<https://www.win-win.or.kr/kr/pages/about/organ.do> (접속: 2024.7.30.)

❑ 예결산 현황

<최근 4년간 재단 예산 및 결산 현황: 2021~2024년>

(단위: 백만원)

구분	소관 부처 등	주요 사업	2021		2022		2023		2024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동반성장 생태계사업, 중소기업기술탈취근절 등	44,257	38,043	41,097	39,100	42,040	36,398	38,679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운동	152	152	146	146	138	138	-
	농림축산식품부	FTA 피해 농어업인 지원을 위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활성화 홍보	515	513	500	498	222	221	242
	해양수산부	-	-	-	-	-	-	-	-
	소계		44,924	38,708	41,743	39,744	42,400	36,757	38,921
정부 外	위탁사업	대·중소기업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등	27,458	23,485	31,156	25,445	27,305	23,116	26,700
	민간 출연금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농어촌상생기금	413,276	289,242	474,963	366,398	419,460	466,366	360,112
	자체수입		5,749	4,645	9,472	1,818	19,381	3,609	11,158
	소계		446,483	317,372	515,591	393,661	466,146	493,091	397,970
합계			491,407	356,080	557,334	433,405	508,546	529,848	436,891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제출자료

[참고자료 5]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현황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영위원회 및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영본부 현황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內)

○ **(설립목적)**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민간기업등과 농어촌·농어업인등 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이라 한다) 설치

○ **(법적근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9]

○ **(연혁)**

- '15.11.30. 한·FTA 비준 동의 시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으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기로 여야정 합의
- '16.06.24. 'FTA농어업법' 등 3개 법률* 개정안 의원입법 발의
  * (FTA농어업법) 기금 관리·운용주체(대·중소기업협력재단), 용도 규정,
    (상생협력법) 재단명에 '농어업'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기부금의 10% 법인세액 공제
- '17.01.17. 국회 본의회 통과에 따른 3개 법률 시행
- '17.03.30.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영본부 및 제1기 운영위원회(위원장 이태호 서울대 교수) 출범
- '19.11.28. 기업요청에 따른 농어촌상생기금 현물(물품) 출연 근거 마련을 위한 'FTA농어업법' 개정 및 시행
- '21.05.14. 제2기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영위원회(위원장 곽수근 서울대 교수) 출범
- '23.05.28. 제3기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영위원회(위원장 곽수근 서울대 교수) 출범

○ **(역할 및 기능)** 농어촌상생기금 관리·운용

○ **(주요사업)** ❶농어촌 지역 학교와 학생, 농어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장학사업, ❷농어촌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❸농어촌 지역개발 및 활성화 사업, ❹민간기업등과 농어촌·농어업인등 간 서로 이익을 증진

9)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 ② 상생기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한다)내에 상생기금 운영위원회와 상생기금 운영본부를 설치하여 별도 회계로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하기 위한 공동협력사업, ❺농협중앙회에서 발행하는 상품권 사업 등

○ **(조직 및 인원)**

- 운영본부(17명): 본부장 1명, 부장 2명(운영부/관리부) 부서원 14명(운영부 7, 관리부 7)
- 운영위원회(17명): 위원장 1명, 운영위원 16명(농어업계 4, 기업계 4, 공익대표 4, 정부 4), 간사 1명(운영본부장)

❑ 연도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현황: (기금 설립 이후 최근까지)

○ 기금 조성 총계: 2,401억원('24.06.30. 누적)

<연도별 기금 조성 현황>

(단위: 개사, 백만원)

구 분	공공기관		민간기업		개인 및 단체		합 계
	참여	금액	참여	금액	참여	금액	
2017년	14	30,625	2	301	68	39	30,965
2018년	30	17,930	9	5,215	27	14	23,159
2019년	43	17,543	26	5,045	9	5	22,593
2020년	65	20,435	76	17,053	16	107	37,595
2021년	94	25,739	70	19,684	5	103	45,526
2022년	102	16,398	111	18,792	7	226	35,416
2023년	117	13,387	103	16,941	5	166	30,494
2024년6월	24	4,345	32	5,961	4	3	10,309
다년협약잔여분	2	270	3	3,780	-	-	4,050
총 계	132	146,672 (61.4%)	199	92,772 (38.3%)	130	663 (0.3%)	240,107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예결산 현황: 2021~2024년

○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FTA농어업법 제18조의2 제3항에 따라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이나 물품, 그 밖의 재산 등으로 조성하고 있음

<최근 4년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홍보 관련 예결산 현황: 2021~2024년>

(단위: 백만원)

소관부처	사업 내용	2021		2022		2023		2024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농식품부	FTA 피해 농어업인 지원을 위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 홍보	515	513	500	498	222	221	242
해수부	-	-	-	-	-	-	-	-

* FTA 피해 농어업인 지원을 위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 홍보는 FTA기금사업인 농식품부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센터운영(세부사업)'으로 추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제출자료